

보육시설을 보호하는 공정주택법

안내 자료



Civil Rights
Department
STATE OF CALIFORNIA

캘리포니아주 법률은 임대주, 주택 소유주 연합(HOMEOWNER ASSOCIATIONS, HOA) 및 기타 주체가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해당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
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 운영 시 알아야 할 10가지

1. 임대주는 귀하가 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¹ 귀하의 소규모 가정형 보육시설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대 6명, 대규모 가정형 보육시설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대 12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으며, 임대주는 이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.²
2. 임대주는 귀하가 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.³
3. 임대주는 귀하가 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.⁴
4. HOA는 귀하가 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주택 판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 HOA는 또한 해당 주택에서 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해당 주택소유주가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.⁵
5. HOA는 귀하가 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거나, 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로서 주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 또는 규제하거나, 이에 대한 벌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.⁶
6. 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은 책임 관련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단, 임대주나 HOA는 귀하가 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.⁷
7. 주택소유주의 보험사는 해당 주택에서 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이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주가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가정형 보육시설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.⁸
8. 인가를 받은 소규모 및 대규모 가정형 보육시설은 어느 주거지역 내에서도 운영이 허용되어야 합니다. 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은 다음 형태의 주택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.
 - 단독주택
 - 아파트
 - 콘도
 - 타운하우스
 - 다세대주택
 - 기타 연립주택⁹
9. 도시 및 카운티는 인가를 받은 소규모 및 대규모 가정형 보육시설을 다른 주거 가정과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.¹⁰ 예를 들어, 도시 및 카운티는 가정형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 구역 지정 허가나 영업 허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¹¹ 어느 유형이든 주거형 주택이 허용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, 해당 지방정부는 인가를 받은 가정형 보육시설에만 적용되는 특별규칙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.
10. 공정주택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, CRD에 불만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.¹²

민원 제기처

민권 부서

calcivilrights.ca.gov/complaintprocess

수신자 부담: 800.884.1684 / TTY: 800.700.2320

1 Health & Saf. Code §§ 1597.41(a)-(c) 및 (e).
2 Health & Saf. Code §§ 1597.465, 1596.78(b)-(c) 및 1597.44(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돌봄 인가 발급부로부터 소규모 가정형 보육 시설 인가를 받은 가정은 상황에 따라 최대 6~8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으며,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돌봄 인가 발급부로부터 대규모 가정형 보육시설 인가를 받은 가정은 상황에 따라 최대 12~14 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음).
3 Civ. Code § 1942.5(d); Health & Saf. Code § 1597.41(e).
4 Health & Saf. Code §§ 1597.41(a)-(c); Civ. Code § 1942.5(d).
5 Health & Saf. Code §§ 1597.41(a)-(c) 및 (e).
6 Health & Saf. Code §§ 1597.41(a)-(c) 및 (e).

7 Health & Saf. Code § 1597.531(a).
8 Ins. Code §§ 676.1(a)-(b).
9 Health & Saf. Code §§ 1596.78(d), 1597.45(f).
10 Health & Saf. Code §§ 1597.40(a), 1597.45(a).
11 Health & Saf. Code §§ 1597.45(a)-(b).
12 Health & Saf. Code § 1597.41(e); Gov. Code § 12980 et seq.